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8. 5. 16.(금), 15:30

2. 장 소 :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09-01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수도권 6개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함.

2)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2008-09-013)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기존 SD급 채널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HD급 상품의 요금을 현재 요금 대비 상품별로 3,000원씩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설 HD상품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신청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 2008년 5월 2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패키지(SkyEnglishOn)에 대해서 승인 유효기간을 2009년 5월 21일까지 연장 승인하기로 의결함.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건 (2008-09-014~015)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국세를 체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참티브이와 (주)에듀티브이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함.

4)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08-09-016)

-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의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부채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부채비율 산정은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산출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체계,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고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통제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에 대해 접근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5)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08-09-017)

-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초고속인터넷 9개, 위성휴대통신역무 1개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허가심사절차는 ①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외국인 지분(49%이내),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공고여부 등 허가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적격심사'와 ②적격심사를 통과한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계량평가(12점), 비계량평가(88점)를 실시하는 '허가심사'로 나뉘어지며,
- 서비스 제공능력(50점), 재정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을 심사하고,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임.

6) 위성휴대통신 주파수 할당공고(안)에 관한 건 (2008-09-018)

- 차양신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아태위성산업(주)의 위성휴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에 대해 해당 역무에 제공할 주파수의 용도와 할당방법 등을 공고하기 위한 위성휴대통신용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1.5~1.6GHz 주파수 대역중 625KHz
 - 할당방법 : 심사에 의한 할당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허가 시
 - 주파수 이용기간 : 2011. 6. 30.
 - 주파수용도 :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한 위성이동통신서비스에 한함.
 - 기술방식 :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7)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08-09-019)

- 차양신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구)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근거하여 운용하던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규칙, 고시를 정부조직 개편('08.2.29) 내용에 맞추어 통합하여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에 원안대로 의결함.
 - 무선설비규칙 및 6개의 별도 고시로 나뉜 기술기준을 단일고시로 통합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①소출력으로서 안전성 및 혼신 우려가 적은 어린이 완구용 무선조정기에 대한 식별코드 칩 탑재 의무를 삭제하고 ② 속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킨 새로운 표준의 RFID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완화함.

사. 기타

1)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5월 22일(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17:05)